
2013년 전주비전대학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3. 11. 22.

전주비전대학교

●●● 목 차 ●●●

I. 자체평가의 체계	1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	1
2.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4
II. 자체평가 추진 체계	7
1. 조직도	7
2. 자체평가 전담조직의 구성	7
3. 추진절차	8
4. 추진일정	9
III. 자체평가 범위, 영역, 부문(항목) 등	10
1. 총괄 평가 항목(지표)	10
2.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모형	10
3. 자체평가의 범위 및 영역	11
4. 평가지표 선정과정 및 절차	12
5. 평가지표 및 배점의 구성	13
6.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5
IV. 평가결과	18
1. 총괄	18
2. 지표별 평가결과	19
V. 자체평가 결과 활용방안	46

I. 자체평가의 체계

1. 자체평가의 대학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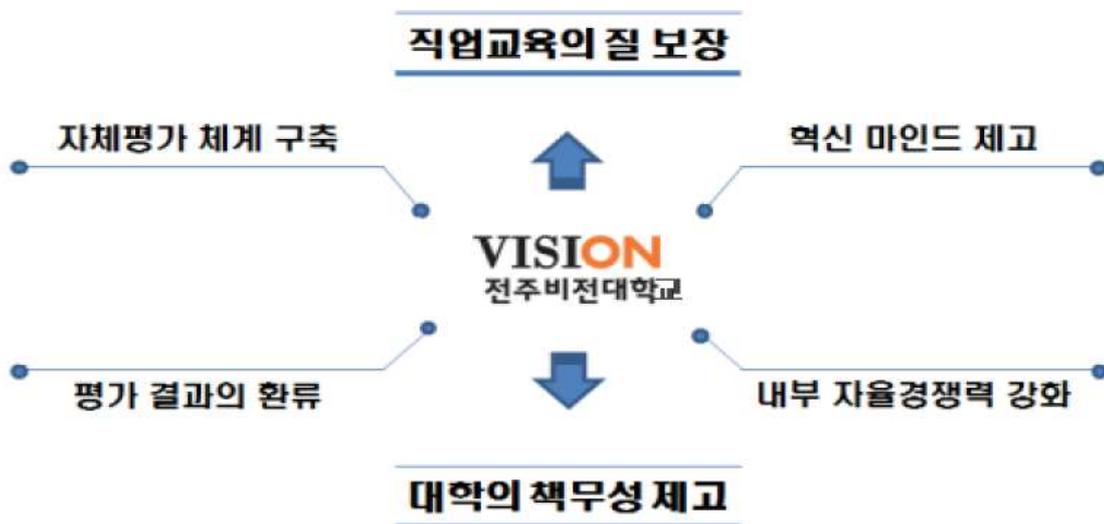
1) 자체평가의 필요성

- 국내외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대학의 대내외적 상황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 필요
- 고등교육시장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운영 구성요소들의 운영체계에 대한 유기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자기진단 및 개선노력이 필요
-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대응



2)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의 지속가능한 자기점검체계 구축 및 대학의 혁신 마인드 제고
 -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자기점검체계 구축
 - 상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구성원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함
- 자체평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
 - 자체평가는 대학 내부 평가요소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중요하므로 대학정보 공시, 자체 평가, 기관평가인증, 장기발전계획 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시스템 개선
 -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 재정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업무 및 직무평가,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유도
- 대학 내부의 자율경쟁력 강화
 -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개선의욕 고취
- 직업교육의 질 보장
 -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으로 교육기관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질 수준에 대한 필요조건을 초과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의 질 보장
- 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킴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증진



3)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포함)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음
-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 학칙에 의해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함
-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두어야 함
- 학교장은 평가 결과를 대학홈페이지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함

2. 자체평가 학칙 및 규정

1) 학칙 (2013. 1. 22.자 개정)

제63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규정 (2010. 9. 1.자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학칙 제19장에 따라 전주비전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자체평가”라 함은 대학발전계획수립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목표, 특성화, 교육여건, 국제화 및 재학생 만족도 등 핵심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대학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재정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6조 (평가지기)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 (전담부서) ①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 등 총괄적 업무수행은 기획실에서 담당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업무 총괄
2. 자체평가 계획 수립
3.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평가결과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 가. 평가모형 및 평가범위 선정
 - 나.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 다.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결정
 - 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의 가중치에 의한 배점 부여
2. 자체평가 및 검증 실시
3. (삭제)
4. 자체평가와 관련한 기타 업무의 수행

⑤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관련 교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또는 학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은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절차 및 활용

제9조 (평가계획 수립) 전담부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통지한다.

제10조 (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과는 전담부서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제11조 (평가실시) ① 전담부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및 검증 실시한다.

제12조 (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 및 학과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 보고) 전담부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지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대학 발전계획 수립, 교육여건 개선, 교육 및 연구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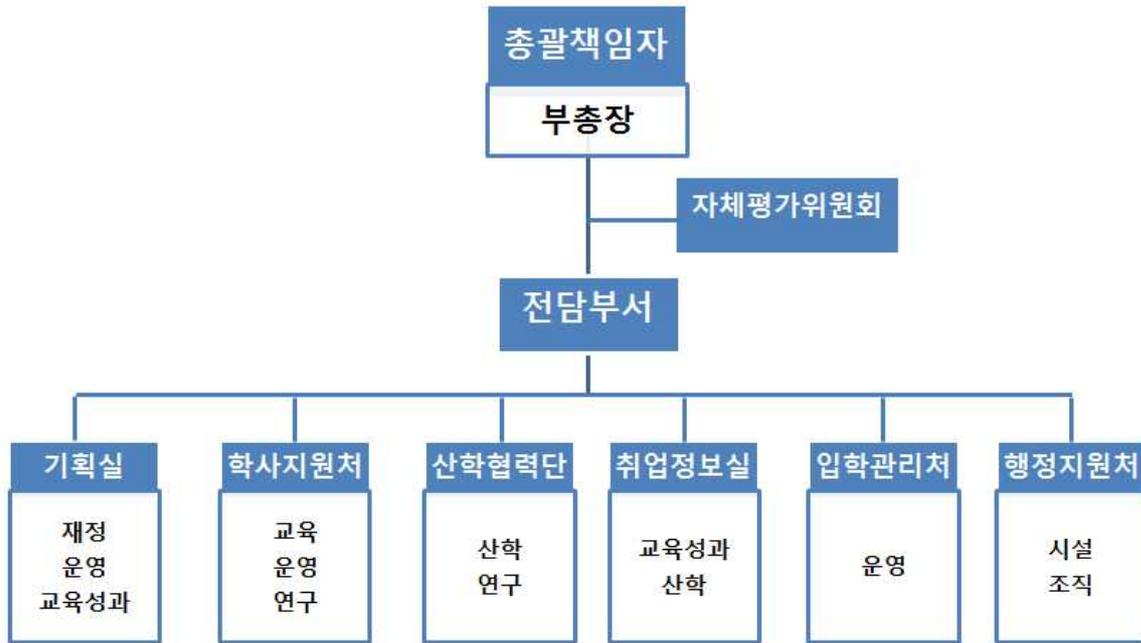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자체평가 추진 체계



1. 조직도

2. 자체평가 전담조직의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총괄책임자	학사지원처	부총장	이공희	
자체평가위원회	선교지원처	처장	조용호	
	학사지원처	부처장	백승선	
	입학관리처	처장	김극명	
	취업지원처	처장	한우용	
	산학협력단	단장	문용규	
	행정지원처	처장	김홍섭	
	기획실	실장	이규태	
	자동차과	교수	송기홍	
	지적부동산과	교수	이근상	
	응급구조과	교수	박창열	
	태권도과	교수	고봉수	
전담부서	기획실	과장	황성태	
	기획실	직원	도윤정	

3. 추진절차

□ 대학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 대학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
- 예산배정
- 추진일정 수립



□ 대학 자체평가 모형 선정

- 대학의 특성 확인
- 대학 자체평가의 목적과 활용방안 규정
- 대학 자체평가 모형 선정
- 대학 자체평가 범위(scope) 선정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결정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의 가중치에 의하여 배점 부여



□ 대학 자체평가 실시

- 대학 자체평가 자료 수집, 평가 및 검증
- 평가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작성



□ 대학 자체평가 결과 활용

- 대학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
- 연차계획 수립 및 향후 계획 반영

4.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일정	201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담부서 선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계획 수립			→						
모형 및 범위 선정				→					
평가지표 수집 및 개발				→					
평가지표 선정				→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결정 및 배점 부여					→				
평가자료 수집 및 평가 실시						→	→		
평가지표별 결과 확인 및 검증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									→

Ⅲ. 자체평가 범위, 영역, 부문(항목) 등

1. 총괄 평가 항목(지표)

1)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는 정보공시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정보공시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한 총괄평가를 실시함

2) 총괄 평가 항목(지표) 선정의 원칙

가. 평가지표 Pool 중에서 자체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지표 선정

나. 대학정보공시 항목,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블러 지표 등 중요 지표 관련 항목은 우선적으로 선정

다. 평가범위(교육여건, 교육운영, 교육성과)를 대표할 수 있고 상태 및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마. 대학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전략적 가치가 명확히 반영된 지표 선정

바. 평가지표 선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가지 이상 체크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그 외 항목은 전략적으로 선정

2.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모형

1)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원칙

가. 대학 발전방향 반영 : 대학의 설립목적 및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평가 모형

나. 전문대학 특성 반영 : 현장중심의 전문직업기술교육과 연계한 평가 모형

다. 정보공시 항목 반영 : 정보공시제도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평가 모형(정보공시항목의 검증지표 활용)

라. 중요도, 중복성, 용이성 : 업무 부담이 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으며 중요도가 높은 평가모형(공인기관에서 관리하는 계량화 지표 중심)

마. 객관성, 신뢰성 확보 :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평가 모형

2)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모형

가. 자체평가의 모형은 자체평가의 목적에 따라 '인증을 위한 대학자체평가', '정보공시를 위한 대학자체평가' 및 '특성화를 위한 대학자체평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자체평가의 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학의 특성화 및 장기발전계획에 지속적으로 보완·반영함으로써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특성화를 위한 대학자체평가'를 지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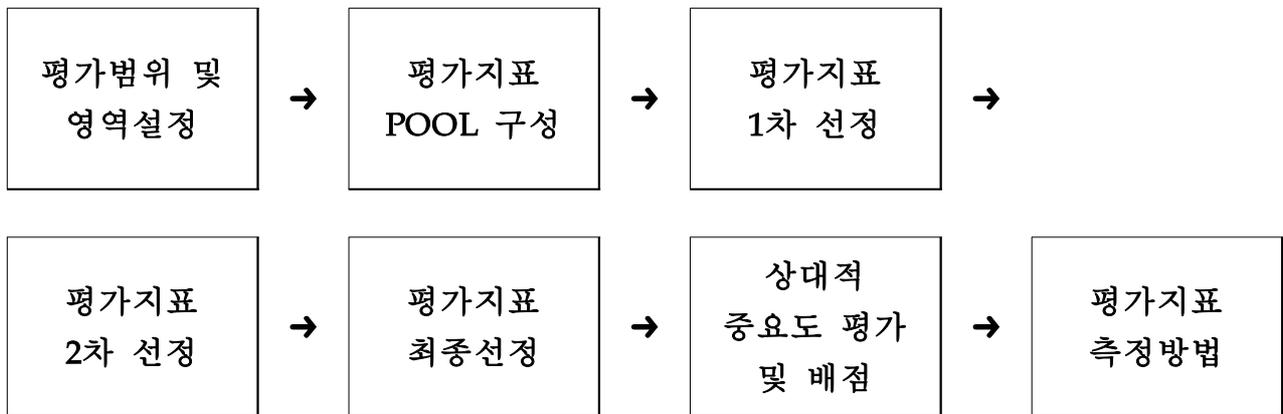
나. 대학 자체평가의 내용을 정보공시 항목에 근거하여 평가 모형을 분류하면 '축소모형', '동일모형' 및 '확장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학은 정보공시항목 전체 혹은 일부와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확장모형'을 지향함

3. 자체평가의 범위(scope) 및 영역

대학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 기관평가 형태로 실시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범위	영역	필요성	비고
교육여건 (투입)	시설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	
	조직		
	재정		
교육운영 (과정)	교육	대학 교육의 합리성, 효율성, 적절성 등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특징 및 장점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	
	운영		
	연구		
	산학		
교육성과 (성과)	교육성과	대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	

4. 평가지표 선정과정 및 절차



- 1)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 포플러 지표를 우선 선정 지표군으로 하고, 대학의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육지표, 대학 장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 등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후보군을 수집하여 평가지표 POOL을 구성함
- 2) 자체평가위원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단순성,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등 평가지표 1차 선정기준에 따라 48개를 1차 평가지표로 선정함
- 3) 1차 선정된 48개의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전담부서 및 행정부서를 중심으로 대학의 비전, 이념, 교육목표, 대학 장기발전계획, 특성화계획 등과의 연계성, 평가의 용이성, 중요도 등 평가지표 2차 선정기준에 따라 35개를 2차 평가지표로 선정함
- 4)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중요도, 활용도, 성과중심, 정량화 가능성, 측정 가능성, 벤치마킹 등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각 지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27개를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함

5. 평가지표 및 배점의 구성

1) 최종 평가지표

범위	영역	평가지표	정보 공시 항목	교육 역량 강화	대학 자체 항목	기관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주관부서
교육여건 (투입)	시설	교지확보율	●				정량,상대	20	행정지원처
		교사확보율	●			●	정량,상대	20	행정지원처
	조직	전임교원확보율	●	●		●	정량,상대	40	행정지원처
		산업체경력 전임교원비율	●				정량,상대	40	행정지원처
	재정	교육비환원율	●	●	●	●	정량,상대	30	행정지원처
		교원인건비의 적절성			●	●	정량,절대	30	행정지원처
		직원인건비의 적절성			●	●	정량,절대	30	행정지원처
		자료구입비의 적절성			●	●	정량,절대	30	문헌정보관
		실험실습비의 적절성			●	●	정량,절대	30	산학협력단
	교육운영 (과정)	교육	전임교원 수업시간 적절성	●		●	●	정량,절대	40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정량,상대	30	학사지원처
전공강좌당 학생수					●	●	정량,절대	50	학사지원처
운영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	정량,상대	50	입학관리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		●	정량,상대	40	학사지원처
		중도탈락학생비율	●				정량,상대	30	학사지원처
		성적평가의 신뢰성		●		●	정량,상대	30	학사지원처
		직원 규모의 적정성				●	정량,절대	30	행정지원처
		장학금 지급률	●	●		●	정량,상대	40	학사지원처
		유학생 유치실적	●				정량,상대	30	국제교육원
연구		전임교원 연구실적	●			●	정량,상대	30	산업기술연구소
산학		교원법정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의	●	●		●	정량,상대	30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전담직원수 적정성			●	●	정량,절대	50	산학협력단
	교류업체당 재학생수의 적정성			●	●	정량,절대	50	산학협력단	
교육성과 (성과)	교육 성과	졸업생 취업률	●	●		●	정량,상대	50	취업지원처
		자격증 취득률			●		정량,절대	50	취업지원처
		재학생 만족도			●	●	정성,절대	50	기획실
		산업체 만족도			●	●	정성,절대	50	기획실
합계								1,000	

2) 평가배점

- 총점 : 1,000점
- 평가지표수 및 배점 구성

범위	영역	평가지표수	배점	비고
교육여건 (투입)	시설	2	40	
	조직	2	80	
	재정	5	150	
	소계	9	270	
교육운영 (과정)	교육	3	120	
	운영	7	250	
	연구	1	30	
	산학	3	130	
	소계	14	530	
교육성과 (성과)	교육성과	4	200	
	소계	4	200	
합계		27	1,000	

- 평가지표 배점별 평가지표수 구성

평가지표별 배점	평가지표 개수	비고
50	8	
40	5	
30	12	
20	2	
합계	27	

6.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기준

구분	내용	
정량평가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역량이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적용 - 평가기준은 항목별 대학 자체 점검 기준으로 설정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전문대학과의 교육경쟁력을 비교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적용 - 평가기준은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 기준으로 설정
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중 정량적 자료값을 산출할 수 없는 평가항목에 적용 	

2) 평가등급

가. 절대평가 등급 :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항목별 대학의 자체 점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등급별 구간을 설정

나. 상대평가 등급

등급	등급기준
S 등급	전국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값
A 등급	S 등급과 B 등급의 중간값
B 등급	전국 전문대학의 평균값
C 등급	동일 간격으로 기준 설정
D 등급	동일 간격으로 기준 설정

다. 등급별 점수기준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등급별 비중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배점별 점수	50	50	45	40	35	30
	40	40	36	32	28	24
	30	30	27	24	21	18
	20	20	18	16	14	12

3) 평가방법

- 가. 평가항목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함(절대평가 지표수 12개, 상대평가 지표수 15개)
- 나.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지표들에 대한 정량평가를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
- 다. 자체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라. 과도한 행정업무를 지양하기 위해 정보공시 자료나 기 제출된 자료를 활용함
- 마. 지표별 정의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평가 업무를 표준화함
(지표작성의 일관성, 명료성, 효율성 확보)

4)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산출방법

영역	평가지표	산출방법
시설	교지확보율	$(\text{보유면적} / \text{기준면적}) \times 100$
	교사확보율	$\{(\text{기본시설면적} + \text{지원시설면적} + \text{연구시설면적} / \text{기준면적}) \times 100$
조직	전임교원확보율	$\{\text{전임교원수} / \text{교원법정정원}(\text{편제정원 기준})\} \times 100$
	산업체경력 전임교원비율	$\{[(\text{5년이상경력자수} \times 1.0) + (\text{3~5년미만경력자수} \times 0.8) + (\text{1~3년미만경력자수} \times 0.6) + (\text{1년미만경력자수} \times 0.4)] / \text{최근5년간신규임용된전임교원수}\} \times 100$
재정	교육비 환원율	$(\text{교육비총액} / \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교원인건비의 적절성	$(\text{교원인건비} / \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직원인건비의 적절성	$(\text{직원인건비} / \text{등록금수입}) \times 100$
	자료구입비의 적절성	도서구입비/재학생수
	실험실습비의 적절성	실험실습비/재학생수
교육	전임교원 수업시간 적절성	전임교원의 주당 총 수업시간수/전임교원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재학생수/전임교원수
	전공강좌당 학생수	총 수강학생수/ 총 개설강좌수
운영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text{정원내 신입생 입학인원} / \text{입학정원}) \times 1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text{정원내 재학생수} / \text{편제정원}) \times 100$
	중도탈락학생비율	$(\text{사유별 중도탈락 학생수} / \text{재적학생수}) \times 100$
	성적평가의 신뢰성	$(\text{A학점 취득학생수} / \text{성적인정학생총수}) \times 100$
	직원규모의 적정성	재학생수/직원수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등록금수입 $\times 100$
	유학생 유치실적	2013년 4월 1일 기준 외국인 유학생수(어학연수생 및 기타연수생 제외)
연구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실적 건수/전임교원 수
산학	교원법정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산학협력단 운영수익/교원법정정원
	산학협력 전담직원수 적정성	재학생수/산학협력 전담직원 수
	교류업체당 재학생수의 적정성	재학생수/현장실습교류업체 수
교육성과	졸업생 취업률	$(\text{건강보험DB취업자수} + \text{해외취업자} + \text{영농업종사자}) /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건강보험 직장가입제외 대상})) \times 100$
	자격증 취득률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자체평가 자료
	재학생 만족도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자체평가 자료
	산업체 만족도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자체평가 자료

IV. 평가결과

1. 총괄

범위	영역	평가지표	현황 평가결과			달성도 평가결과		
			배점	등급	득점	실적	목표	달성도
교육여건 (투입,270)	시설 (40)	교지확보율	20	C	14	231.2	231.2	100.0
		교사확보율	20	B	16	156.5	156.5	100.0
	조직 (80)	전임교원확보율	40	C	28	59.0	63.2	93.4
		산업체경력 전임교원비율	40	A	36	90	99.7	90.3
	재정 (150)	교육비환원율	30	B	24	125.4	125.4	100.0
		교원인건비의 적절성	30	A	27	30.97	35.5	87.2
		직원인건비의 적절성	30	S	30	17	20	85.0
		자료구입비의 적절성	30	A	27	26.2	28.4	92.3
		실험실습비의 적절성	30	S	30	229.3	250.8	91.4
	교육운영 (과정,530)	교육 (120)	전임교원 수업시간 적절성	40	S	40	11.56	11.5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30	C	21	39.4	38.1	96.7
전공강좌당 학생수			50	A	45	30.42	30.2	99.2
운영 (25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50	S	50	100	100	100.0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40	B	32	93.1	95	98.0
		중도탈락학생비율	30	B	24	8.3	6.5	78.3
		성적평가의 신뢰성	30	C	21	39.9	30	75.0
		직원규모의 적정성	30	A	27	32.8	30.5	93.0
		장학금 지급률	40	B	32	15.6	17.4	89.7
		유학생 유치실적	30	B	24	31	81	38.3
		연구 (30)	전임교원 연구실적	30	C	21	0.9	2.5
산학 (130)		교원법정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30	C	21	3,008	4,000	75.2
		산학협력 전담직원수 적정성	50	A	45	155.6	150	96.4
		교류업체당 재학생수의 적정성	50	S	50	5.4	5.0	93.0
교육성과 (성과,200)		교육 성과 (200)	졸업생 취업률	50	A	45	80.1	85
	자격증 취득률		50	A	45	52.4	55.2	94.9
	재학생 만족도		50	A	45	70.8	80.2	88.3
	산업체 만족도		50	S	50	80.8	85.5	94.5
합계			1,000		870			88.14